

환경법 개정 법률 모음

◎ 환경부 공고 제2007-393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국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동 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이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간의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법령 및 중·장기행정계획을 제·개정 및 수립·변경하는 경우 부처협의시 국가위원회에 통보도록 하고, 국가위원회는 의견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도록 하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기간·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별표).

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위원장의 책무 등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

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변경 등)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의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기본전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3개월 내에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국가이행계획을 종합·심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당초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당초 국가이행계획의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참조하여 지방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3개월 내에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 일까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평가서를 국가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통보 시기는 당해 법령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의 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 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아 검토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친 후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1. 법령등 또는 중·장기행정계획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전략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 검토결과 법령등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국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등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원회의 검토결과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등)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법 제4조 제3항5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확정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에 의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검토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4. 향후 정책방향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년도 6월 말일까지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3조(국가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갈등조정특별위원회)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을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위원회의 위촉위원

2.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시 · 도별 시민단체 ·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 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것으로 보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국가위원회는 국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 · 조정하고 국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국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국가위원회 ·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민관협력의 증진 등) ① 국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민사회, 산업체,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민관협의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 연구의 의뢰) ① 국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국가위원회등의 위원 ·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제23조(위원회의 해촉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윤리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위원이 위원윤리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조

제25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발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의한 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경제·사회·환경에 관련한 사항
10.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
1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발전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 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정보망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지정·등록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등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이행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